

전 기 통 신 사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0656호, 2011. 5. 19. 공포, 11. 20. 시행)됨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1. 8. 23. ~ 9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2건(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)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신고를”을 “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부가통신사업 신고서”를 “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”로, “신고인”을 각각 “신고인 또는 신청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”을 “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”로, “신고한”을 “신고 또는 등록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)

2.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1.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
2.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
5. 제공역무의 종류
6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
7. 등록조건

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“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.

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등록 결격사유) 법 제22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본인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
2.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제31조제1항제6호 중 “제22조제1항 전단”을 “제2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(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)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)”를 “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(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)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29조제1항”을 각각 “제29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”을 “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,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”로 한다.

제6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의2.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

3.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,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

제65조제7호 중 “폐지명령”을 “폐지명령,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”로 한다.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 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[별표 2의2]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(제29조제9항 관련)

구 분	등 록 기 준
1.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	<p>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,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해당 광고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,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정보를 인식하고 그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할 것</p> <p>나.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할 것</p> <p>-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저장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</p> <p>다.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</p> <p>1) 「저작권법」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</p> <p>2)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</p> <p>3)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·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</p> <p>라.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·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</p> <p>마. 저장·전송된 저작물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(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), 수량, 일시, 대가 등에 관한 기록(서버 로그파일 등)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·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</p>
2. 인력 및 물적 시설	<p>가.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,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. 다만, 각 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나.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정보·유해정보,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,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</p> <p>다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,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</p>
3. 재무 건전성	<p>납입자본금(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) 3억원 이상</p>
4. 사업	<p>인원·시설 등 일반 현황, 사업개요, 사업추진방향(전략), 매출방안, 향후</p>

계획서	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
5. 이용자 보호 계획서	<p>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2)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3)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4)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5)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·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· 불법복제물 복제자·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·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, 제재 내용, 소요기간,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 <p>나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</p>

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-----
----- 신고인 또는 신청인----- 신고인 또는 신청인-----
-----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1.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
2.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
5. 제공역무의 종류
6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
7. 등록조건

⑤ 부가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⑦ -----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----- 신고 또는 등록한 -----
--.

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“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.

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.

제30조의2(등록 결격사유) 법 제22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본인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

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
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
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
많은 경우의 그 본인

2.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
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
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
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
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
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
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
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자

제31조(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
경) ① 법 제23조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
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6. 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
1항 전단에 따른 별정통신사
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
변경에 관한 사항(법 제27조
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
따른 등록의 일부취소 또는

제31조(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
경) ①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제22조제
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

<p>제65조(권한의 위임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<u>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7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<u>폐지명령</u> 및 사업의 <u>정지명령</u></p> <p>8. ~ 21. (생략)</p>	<p>제65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<u>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</u></p> <p>3. <u>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,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폐지명령,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</u> -----</p> <p>8. ~ 21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	
연 락 처	(02) 750 - 2731